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호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 (직류)	계급	선발 예정 인원	구 분			시험과목(1·2차시험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교육행정	9급	75	70	3	2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선택: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공업 (일반기계)		1	1			1차 필수: 물리 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계			76	71	3	2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음

※ 교육행정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조정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한 점수)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다. 필기시험시간

구 분	시 험 시 간	
	공개경쟁 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함

구 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마.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바. 시험범위 등 안내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됨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 차 병합시험)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 물리, 기계일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18세 이상	2003.12.31.이전 출생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18세 이상	2003.12.31.이전 출생자 (단, 2021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음(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

-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함 (면접시험일 기준)

구분	직 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학력 제한
경력 경쟁	공 업 (일반기계)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조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관련 안내

1.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
2. 구비서류 : 별도 게시된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지원 계획>의
【붙임1】 「편의지원 신청서」 참조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시 12:00~13:00는 제외)
※ 우편접수의 경우 2021. 4. 2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 우편발송 후 교육청으로 전화 연락(☎ 053-231-0564)
※ 응시원서는 2021. 4. 19.(월) ~ 4. 23.(금)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4. 우편주소
(☎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담당자 앞]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응시 자격이 있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단,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여야 함)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바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 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4. 19.(월) 09:00 ~ 4.23.(금) 18:00 ※취소기간 : 4. 19.(월) 09:00 ~ 4.26.(월) 18:00	필기시험	5. 24.(월)	6. 5.(토)	7. 5.(월)
	면접시험	7. 5.(월)	7. 23.(금)	8. 3.(화)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확인: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부터,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때부터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본인 성적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사이트 인터넷 주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edurecruit.dge.go.kr>)로 접속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방법은 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접수마감일에는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다.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단,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며, 원서 접수 완료 이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환불 예정)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환불 예정**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됨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또는 GIF) 규격 : 3.5cm×4.5cm기준, **100Kbyte 미만, 컬러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사진 등록시 유의사항

- 접수된 사진은 응시표, 임용후보자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여야 함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이미 현상된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사용 불가**
-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함**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원서접수 시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원서접수 시에는 접수증(번호)이 출력되고 "응시표" 출력은 2021. 5. 24.(월)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21. 5. 24.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PC 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10), 인터넷(익스플로러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또는 3%)을 가산함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9급	-	변호사	5%
공업(일반기계) 9급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 +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구분) :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실시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9. 유 의 사 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희망자는 1인당 1개 직렬(직류)에 1회만 지원가능(복수지원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가 시험실에 들어간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사. 필기시험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디지털 시계,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자.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 카.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필기시험 장소공고(2021.5.24.)시 안내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항 안내 예정

10. 면접시험 실시

- 가.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나. 평정요소에 인문학(평가대상 도서)을 포함하여 인문학적 소양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시 험 종 류	대상자	출 제 방 향
면 접 시 험	2021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평가대상도서의 이해를 통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인문학을 접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 가능한 문항 출제

□ 2021년도 인문학면접 문항출제 대상도서

- 「문화의 수수께끼」, 「백범일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 인문학면접 문항출제 대상도서는 사전추첨으로 선정

- 인문학면접 대상도서 연차적 확대에 따른 부담 경감
- 추첨 일시 : 2021. 2.26.(금) 10:00
- 추첨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상담실(본관 1층)
- 대상도서(2021년도 총 20종) 중 문항출제 도서 3종 추첨
- 추첨 방법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도서 추첨은 외부참석자 없이 감사담당 공무원이 실시
 - 추첨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

※ 참고 : 2021년도 인문학 면접 대상도서 목록

구분 년도	동 양(철학, 문학, 역사)	서 양(철학, 문학, 역사)	도서 수
2021	논어, 명심보감, 난중일기, 열하일기, 목민심서(정약용), 백범일지(김구), 삼국유사(일연), 간디 자서전(간디), 삼국사기(김부식), 도덕경(노자)	에밀, 데미안, 그리스 로마 신화, 자유론, 이방인, 소크라테스의 변명(플라톤), 역사(헤로도토스), 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해리스), 갈매기의 꿈(리처드 바크), 어린왕자(생텍쥐페리)	총 20종

10.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 등의 선택과목인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됨(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조정점수제도 폐지)

11. 기타 시험관련 문의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4)으로 문의